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만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임만균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영, 김재형, 김종무, 김태호,
김평남, 김화숙, 박상구, 신정호,
유정희, 이상훈, 정재웅, 채인묵
의원(12명)

1. 제안이유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보완하여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명시함(안 제49조제2항)
- 구 건축안전센터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9조제3항)
- 안전점검 등급기준을 별표 6으로 개정함(안 제49조제4항)
-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을 포함시킴(안 제50조제2항제8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 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진·화재 및 공사장”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라.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바.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건축안전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를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다음 표”를 “별표 6”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제50조제2항제9호(종전의 제8호) 중 “피난·화재”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u>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u>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 -----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u> 등 <u>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u>의 <u>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u>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u>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p> <p>1. <u>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u></p>

현행	개정안
	<p><u>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u> <u>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u> <u>정책개발</u></p> <p><u>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u> <u>전관리계획 수립</u></p> <p><u>라.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u> <u>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u></p> <p><u>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u> <u>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u> <u>보 및 프로그램 개발</u></p> <p><u>바.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u> <u>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u> <u>종합계획 수립</u></p> <p><u>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u> <u>제도 지원</u></p> <p><u>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u> <u>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경우</u></p> <p><u>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u></p> <p><u>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u> <u>운영·관리</u></p> <p><u>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u> <u>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u></p>

현행	개정안
<p>② 건축안전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p>	<p>에 관한 사항</p> <p>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p> <p>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 제공</p> <p>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p> <p>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 ----- ----- -----.</p>

현행	개정안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 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다음표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생략)

1. ~ 7. (생략)

<신 설>

8.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피난·화재 및 공사장

④ 제3항-----

----- 별표

6-----

-----.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

----- 임의관리대상 건축

현행	개정안												
<p>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u></p> <p>-----</p> <p>-----</p> <p>-----</p> <p>[별표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815 837 1417 1341"> <thead> <tr> <th>등급</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우수</td> <td>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td> </tr> <tr> <td>양호</td> <td>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td> </tr> <tr> <td>보통</td> <td>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td> </tr> <tr> <td>미흡</td> <td>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td> </tr> <tr> <td>불량</td> <td>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등급	기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등급	기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